



※ 작성방법

1. ⑤사업장 소재지: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.
2. ⑥해양심층수 생산량(해당 분기 중): 분기 중 생산한 해양심층수의 합계를 적습니다(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해양심층수의 취수량과 동일해야 합니다).
3. ⑧해양심층수: 해당분기 중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양을 적습니다.
4. ⑨처리수: 해당분기 중 판매한 처리수를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합니다) 제36조제3호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양을 각각 적습니다.(처리수의 종류별로 판매한 양과 이를 해양심층수로 환산한 양의 합계표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)
5. ⑪자기사용: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자신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경우 여기에 사용한 해양심층수의 양을 적습니다.
6. ⑫타인제공: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무상 또는 통상판매가격 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(전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함)으로 제공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, 무상 또는 뚜렷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해양심층수와 처리수(해양심층수로 환산한 양)의 합한 양을 적습니다.
7. ⑬총판매량: 통상판매량과 자기사용 및 타인제공 양의 합계를 적습니다.
8. ⑭배수량: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후 시설의 유지·청소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바다에 다시 버리는 해양심층수의 양을 말합니다.